

## 예수 간음한 여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비유:

강상우 사회복지 Coram Deo

본고는 예수님과 간음한 여인과의 대화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동성애자와 동성결혼에 대한 주장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예수와 간음한 여인과의 대화는 죄[姦淫/同性愛]에서 벗어나길 원하신다는 점—예수님의 함께하심(being together)이 곧 승인(approval)이 아니라는 점—과 동성애 등에 대한 극단적 발언/指摘질에 대한 자제를 요구하신다는 점을, 2)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동성애자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우리의 이웃이라는 점과 동성애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모습/태도가 영생(eternal life)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점을, 그리고 3) 동성애는 인권[신학적 인권]이 아님을 다만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인 부침을 받는 법률적 인권—인권으로 인정할 경우에—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구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서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긍정적 여론 형성과 더불어서 사회적 공신력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가 필요하다.

주제어: 예수, 간음한 여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동성애, 동성결혼(same-sex marriage).

### I 들어가는 말

#### 1 WWJD(What Would Jesus DO?)

1)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에게 하듯이(요8:1-11). 잠시 상상의 날개를 펴보도록 하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성애자를 만나면 어떻게 대하셨을까?(WWJD?) 예수님의 공생애 삶 동안에 동성애와 만나서 나눈 대화나 기록들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전통적 해석 공동체(Interpretive Community)에서 벗어나 게이리딩이나 퀴어리딩(Gay Reading, Queer reading)을 하는 일부 수정주의자들(revisionists)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동성적 행위와 같은 기이한(queer) 행동을 한 분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러한 수정주의자들의 주장은 매우 신성모독(blasphemy, 神聖冒瀆)적인 주장이다. 기이한(queer) 주장을 하는 수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동성애적 지향을 지니신 분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성애자를 만난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통/정통주의적 견해를 따르는 이들

에게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주장이다.(참고로 Jennings Jr., Helminiak와 같은 수정주의자들은 백부장의 종[마8:5-13]이나, 예수님과 ‘그의 사랑하는 제자’[요13:23],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벌거벗은 젊은이’[막14:51-52],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요11장] 등에 대해 교회 공동체와 다르게 게이/퀴어리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전통/정통주의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성경이 무엇보다도 구속사(救贖史)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예수님이 동성애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은 그리 높지/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한 이유로 다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요8:4 이하, woman was caught in the act of adultery. NIV)과의 대화를 통해서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추론(推論)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왜 다른 사람(事例)이 아닌 ‘간음한 여인’이냐고 의아(疑訝)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적 기준에 따르면 여인의 간음과 동성애는 같은 성적 일탈행위의 한 행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권혁남, 2015: 233)<sup>1)</sup> ‘간음=성적 일탈행위’인 것처럼 ‘동성애=성적 일탈행위’이기 때문이다.[同性愛=姦淫=性的逸脫行爲] 제프리 리처즈(Jeffrey Richards)도 자신의 책, 『중세의 소외집단: 섹스·일탈·자주』(Sex, Dissidence and Damnation)에서 간음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態度/모습을 통해 동성애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Richards, 1999: 201; Lutzer, 2011: 124; 김진규, 2017: 106-107; 강상우, 2017; 이태희, 2016: 822 참조)<sup>2)·3)</sup>

- 1) “예수의 윤리는 창조자(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한 공동체(창세기 2장)로의 복귀를 요청한다. 그리고 혼약 안에서의 정절(Fidelity)을 남편과 아내 두 파트너를 위한 표준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간음은 창조자의 의도라는 상황에서 이탈된 것이다.”(권혁남, 2015: 233)
- 2) “동성애를 교회 안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간음이나 탐욕,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 포르노 등의 죄와 분리된 특별한 것으로 대제한 안 된다. 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Lutzer, 2011: 124) 강조는 본연구자.); 이태희 국제변호사도 같은 견해인 것 같다. “성은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질서의 핵심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생을 서로에게 헌신하기로 서약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만 성을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하셨고, 그 외의 모든 성적 관계를 ‘간음’으로 규정하셨다(출20:14) 따라서 혼전 성관계, 혼외 성관계, 그리고 동성 간의 성관계는 전부 간음이며, 이와 같은 성적 범죄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허무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이태희, 2016: 822); 레위기의 동성애 금지법(레18:22; 20:13) 등을 포함한 레위기 18장과 20장이 언급한 죄들은 모두 제7계명을 적용해야 할 구체적인 상황을 밝힌 것이라고 한다.(김진규, 2017: 106-107).
- 3) 이슬람도 동성애를 간음으로 이해하는 것 같다. 이슬람법의 법원의 하나인 끼야쓰(Qiyas, 추론 또는 유추)는 “원전에 판결이 없는 사안(파르으)을 합법적 이유(일라)를 가진 원전의 사안(아슬)으로 판결(후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The Rule of Qiyas』에 제시된 말레이시아의 끼야쓰 사례들을 보면 남녀 동성애를 간음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임병필, 2018: 155-156)

파르으	아슬	일라	후쿰
간간	간음	혈통과 존엄성 파괴	금지
(남·여) 동성애	간음	혈통과 존엄성 파괴	금지
근친상간	간음	혈통과 존엄성 파괴	금지
매춘	간음	혈통과 존엄성 파괴	금지

자료: 임병필, 2018: 155-156 내용의 일부.

2) 예수님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하듯이(눅10:30-37). 또다시 상상해 볼 것은 누군가에게 사회적 원조가 필요한데 그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구미정, 2014: 37-38 참조)<sup>4)</sup> 원조가 필요한 상대방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에 성경이 동성애를 신앙적인 죄(sin)라고 말하기 때문에 동성애자에 대한 원조를 무시/中斷해야 하는가의 문제다. 예수님께서 원조(援助)가 필요한 이를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가 그것이다.(눅10:25-37 참조) 만약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원조의 대상인 ‘강도를 당한 어떤 사람’(a man who was robbed)이 동성애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원조가 필요한 그가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될 수 없었을까? 더욱 심하게 말해 강도를 당한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로 에이즈(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에 걸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 내에서 적극적으로 원조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도[동성애자] 또한 우리의 이웃으로 원조가 필요한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이기 때문이다. 게이리딩의 대표적인 연구자 중의 한 사람인 대니얼 A. 헬미니악(Daniel A. Helminiak)의 다음과 같은 반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동성애자도 이성애자와 동등한 존귀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헬미니악이 비록 게이리딩을 하는 수정주의자로 전통주의와 다른 견해를 지니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그의 다음과 같은 질문(質問)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 재담가는 그 문제를 재치 있게 표현했다. ‘하느님께서 아담과 스티브가 아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다’ 그렇다면 스티브는 누가 창조했을까?(Helminiak, 2003: 179)

이성애자 아담(철수)이든 동성애자 스티브(영수)이든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로, 둘 다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동등(同等)하게 이성애자(아담, Adam)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스티브, Steve)의 창조자이시기도 한 동일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4)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오로지 그의 약함과 무력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마리아인 역시 지위나 권리나 따져가며 자비를 베풀 것이 아니라는 점도 상기해야 한다. 그는 그저 고통당한 ‘타자’의 현존을 외면하지 않고서 가까이 다가가 ‘이웃’이 되어 주었을 뿐이다.”(구미정, 2014: 37-38)

## 2 연구문제와 범위 그리고 한계

본고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예수, 간음한 여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譬喩] 예수 그리스도와 ‘간음한 여인’과의 대화와 예수님이 언급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동성애와 관련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연구문제 2: [동성애와 동성혼 再考] 그렇다면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먼저 연구문제 1에서는 간음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동성애와 관련해서 무엇을 말해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전술하였듯이 동성애는 성적 일탈행위의 한 형태다. 간음도 성적 일탈행위라는 점에서 동성애에 대한 태도는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에 대한 태도와 유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연구문제 2에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더 나아가서 영생(永生, eternal life)과 관련된 대화 가운데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동성애에 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일부 연구자들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동성애 행위 자체를 인정/受容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한다) 더 나아가서 본고는 성경의 가르침-반동성애적 시각[전통주의 입장]-에 근거해서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해서 재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통주의 관점(pro-hetero, anti-gay)에서 동성애를 바라본다. 동성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했듯이-그리고 간음한 여인 사례에서 말해주는 것처럼(Richards, 1999: 201 참조)-성적 일탈행위의 한 형태라는 점이다(강상우, 2022; 2020; 2017 참조, 사실 성적 일탈의 한 형태인 동성애 문제를 기독교 본질의 문제 즉 교리적 수준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유사교리화에 해당한다고 본다.) 성경이 합법적인 성행위는 먼저 성행위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단지 결혼제도 가운데서 한 쌍(一双)의 남녀부부 사이[異姓夫婦關係]에서 행해지는 경우뿐이다(권혁남, 2018: 1070).<sup>5)</sup> 성행위의 목적은 생식(procreation)과 더불어 성적 즐거움(快樂, pleasure)의 조화에 있다.(강상우, 2022)<sup>6)</sup>(생식과 성적 즐거움의 경우 극단적으로 한 면만을 강조할 경우에는 문제가

5) “기독교는 결혼을 하나님의 창조질서 속에 놓인 것으로서 인간을 위해 제정한 제도로 이해한다. 성경의 창조기사에 따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창1:27)하였다. 그러나 사람(남성)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겨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여성)을 지었다(창2:18-23). 그러므로 결혼에 대한 창조의 계명은 두 사람(남자와 여자, 창1:27b)이 서로 연합하여 ‘한 몸’(창2:24)을 이루는 것이고, 사랑으로 연합된 하나 됨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창1:28)하게 살아가는 삶이 곧 창조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된다(Thielicke, 2015: 426).”(권혁남, 2018: 1070).

6)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교의 혼인에는 3가지 특징이 있다. 일부일처제, 독점적인 성생활, 결혼의 지속성이다’ 그리스도교는 여기에 새로운 특징 한 가지를 추가했다. 결혼을 비단 세속적이고 사적인 일로 평가할 게 아니라 종교

되었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극단적 생식의 강조는 과거 교부들의 견해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출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성교는 모두 불법이고 죄악이 되고 만다.<sup>7)</sup> 상대적으로 극단적 쾌락만을 강조할 경우에는 동성애를 비롯해 모든 성행위가 허용되게 되는데 이러한 성적 태도가 오늘날 사회에 만연해지게 된 것은 자기 중심화된 성/성담론 [Egocentric sex discourse]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성경이 지적하듯이 동성애는 간통(adultery)이나 혼전성교(pre-marital sex), 간음(fornication) 등과 같은 신앙적인 죄들(sins) 중의 하나(a sin)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와 관련하여 교회 공동체를 과잉대표하는 이들의 동성애에 대한 극단적이면서 자극적 발언에 대해서는 재고(거리 두기, distancing)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극단적이며 자극적 발언이 과잉 대표되는 환경으로 인해서 성경에 근거한 ‘동성애가 죄’(The Bible states that homosexuality is a sin)라는 발언/진술이 동성애 혐오(homophobia)로 와전(訛傳)되는 측면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sup>8)</sup> 다시 말해서 기독교를 형식적으로 과잉대표하는 이들의 동성애에 대한 자극적 발언에다 거기에 더하여 자기중심화된 성/성담론의 경도된 현실로 인해서 ‘동성애는 신앙적 죄(a sin)’라는 발언이 ‘동성애혐오(homophobia)’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이다. 본고는 설교조(說敎 調)의 기술과 상상적 기술을 하고 있다. 좀 긍정적으로 기술하자면 일종의 사고실험(思考實驗, thought experiment)에 가깝다는 점도 밝힌다. 어떤 이들에게는 라떼[몬데]처럼 들릴/보일지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표: 성경적 성행위 기준과 동성애]

결혼 유·무	성행위 대상	성행위 목적	성행위 유형
결혼* 유	한 쌍(雙)의 남녀(異性)	생식과 쾌락(성적 즐거움 <sup>9)</sup> )의 조화**	성경적 성행위
결혼과 무관	동성(同性)	생식과 무관 상대적으로 쾌락 추구	비성경적 성행위*** 성적 일탈행위

\* 동성결혼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나라라고 할지라도 성경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간통(姦通)의 경우와 비슷한데

차원의 일로 격상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낙원에서 순수 결혼이라는 제도를 시작하셨기 때문이다.”(Bleyer, 2017: 23-24)

7) 다음을 참조하라. “결혼체제는 인구재생산을 이성간 법률혼에 강력히 연계시킨다. 따라서 미혼모와 같은 법 제도 외에서의 재생산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결혼이민가정에서의 재생산과 같은, 법제도 안에 있고 인간 재생산을 하더라도 국가적 인적 자원 공급에 우려가 있을 때는 회피하는 경향마저 띤다.”(281, 16번 각주)

8) 문시영 교수의 다음의 지적도 참조할 만하다. “적어도 ‘기독교의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내부의 충분한 토론을 충분히 거친 후 합의된 내용들로 발표하는 지혜가 필요할 듯싶다.”(문시영, 2009: 220)

---

간통이 실정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경의 가르침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비성경적 성행위임과 동시에 성적 일탈행위의 한 행태에 해당한다.

\*\* 이는 결혼 관계에서 출산 가능성을 배제한 성관계(sex without proliferation)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완경기 이후에도 여전히 성관계는 가능하고 불임 부부간의 성행위도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생식과 쾌락은 삶의 자리(Sitz im Leben)에서의 정도의 문제로 봐야 한다. 다만 극단적으로 어느 하나만을 절대적 진리인 것처럼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 참고로 성경적 성행위에서 벗어난 것은 비(非)성경적 성행위로 성적 일탈행위(性的逸脫行爲)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성경적 성행위=성행위-비성경적 성행위. 비성경적 성행위>≠성적일탈행위. 극단적으로 생식만을 강조하는 성행위는 비성경적 성행위이나 그렇다고 해서 성적일탈행위는 아니기 때문이다.

---

자료: 감상우(2022)

## II 예수님의 대화(對話)와 비유(譬喩), 그리고 동성애와 동성결혼

### 1 예수님과 간음한 여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비유

#### 1) 간음한 여인을 만난 예수님

간음한 여인의 사례를 통해 동성애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이 여인은 무슨 이유로 간음을 했을까? 간음의 원인은 무엇일까?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녀의 환경 요인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유전적 요인 때문일까?(nature and nurture) 그녀의 그러한 행동이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해서 용인해야만 할까? 아니면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녀의 간음[行動 自體]은 문제를 삼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간음의 원인이 그 무엇이든 간에 간음 행위가 성경의 가르침에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동성애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그것이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든 환경에 의한 것이든 그 어떤 다른 그 요인에 의해서 간에 성경의 가르침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동성애라는 행위 그 자체는 그 어떤 경우에서라도 정당성을 지지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에게 하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요 8:11하, <개역개정>, 강조는 본 연구자)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반해 친동성애적 수정주의자에 속하는 제닝스(Theodore Jennings Jr.)는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의 생활양식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았다고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9) 인간의 성생활의 신적 선물에 대한 이 뒤틀립과 대조해서 결혼의 끈과 보호 내에 있는 결혼행위의 기쁨과 아름다움이 있다. 이 기쁨은 잠언 5장 15-23절에서 가장 선명하게 제시된다.(Kaiser, 2016: 266)

1. 우리의 배우자는 우리의 즐거움의 원천이다(15절)
2. 우리의 배우자와의 관계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16-17절)
3. 우리의 기쁨은 반드시 우리의 배우자에게 있어야 한다(18-20절)
4. 우리의 배우자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응시에 노출된다(21-23절)

예수는 이 여자의 성적인 생활양식에 대해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녀의 ‘죄’를 정죄하기보다는 이를 벌하는 것을 중단하는 데 훨씬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 텍스트는 예수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러한 생활양식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Jennings, 2011: 116)

제닝스가 이런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은 간음한 여인의 성적인 생활양식을 예수가 존중해 주셨으니 동성애자들의 성적인 생활양식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것은 마땅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다.<sup>10)</sup> 그러나 성경에서도 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듯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요8:11하, <개역개정>, ‘어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공동번역 개정판>, ‘Go now and leave your life of sin.’, <NIV>, ‘go, and sin no more.’ <KJV>, ‘You may go now, but don't sin anymore.’ <CEV>, ‘Go and practice **chet**[**συν**] no more.’ <OJB>, ‘**π ο ρ ε ύ ο υ , κ α ι μ η κ έ τ ι ἁ μάρτανε** [poreuou, kai mēketi hamptane]’ 강조와 첨가는 본 연구자)고 하신 것이다. 간음한 여인에게 간음이라는 그런 잘못된 성적 생활양식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신의 명령[神命]이신 것이다. 강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레위기 19:18, 마태복음 22:39)는 말씀은 동성애적 사랑(homosexual love), 즉 성애적 사랑(erotic love)이 아닌 아가페(agape) 사랑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강업, 2005: 23) 제프리 리처즈나 안계정의 기술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프리 리처즈(Jeffrey Richards)가 자신의 책, 『중세의 소외집단: 섹스·일탈·자주(Sex, Dissidence and Damnation: Minority groups in the middle ages)』에서 적고 있듯이 간음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그녀에게 과거의 행위 즉 간음을 행하는 삶을 청산(清算)할 것을 요구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계정도 예수님께서 죄 자체를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재발(再發)을 막으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있는 문제는 (기독교는 동성애에 대해 분명히 반대했으므로)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의 원칙적 태도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기독교 세계가 동성애 범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믿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스도는 성윤리에 대한 포괄적인 윤곽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그가 동성애자를 만났다는 기록도 없다. 그러나 돌팔매를 맞고 있는 간부(姦

10) 참고로 예수 그리스도가 비난하지 않으심(do not condemn)이 곧 인정하심이 아님을 또 ‘함께 하심’(being together)이 곧 ‘인정하심’(approval)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구약의 일부다체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구약에 일부다체제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은 인정하신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되고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신적인 인정(divine approval)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주장인 것이다.

婦)(간통은 구약에서 동성애처럼 중죄였다)를 우연히 만났을 때, 그는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먼저 나에게 돌을 던져라’라고, 돌을 맞고 있는 간부에게는 ‘어서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말거라’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처벌보다는 용서와 이해가 그리스도의 메시지였다. 그렇다고 해서 그[예수 그리스도]의 태도가 간통을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그가 추구한 바였다. 동성애에 대한 그의 태도도 이와 비슷했을 것이라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Richards, 1999: 201, 첨가 [ ]와 강조는 본 연구자)

“우리는 앞에서 이미 간음한 여인에 대한 예수의 태도를 통해 용서와 처벌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람들은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예수에게로 데려온다.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사람들은 ‘법대로’ 처벌을 요구하지만 예수는 처벌 대신 용서를 행한다. 그리고 그녀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명한다. 예수에게서 용서의 목적은 죄를 은근슬쩍 덮어두거나 죄 자체를 눈감아주려는 것이 아니다. 죄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이다.”(안계정, 2013: 282. 강조는 본 연구자)

이는 동성애와 관련해서도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동성애가 죄(sin)이기 때문에 동성애적 생활양식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다. 그러한 동성애적 삶의 자리에서 발걸음을 돌리라는 지적이다. “동성애 이슈에 관하여 전혀 다르게 접근하여 허용하자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따뜻하게 대하셨는데, 교회는 왜 정죄하느냐고 따지는 것이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으로 대하셨다고 죄까지 용인하신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수님은 간음해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다.’ 필자도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품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동성애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나 동성애 자체를 옳다고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김영한, 2016: 270; 성인경, 2001: 161 참조) “예수님은 동성애자를 어떤 태도로 바라보셨는지’를 생각해 보고, 한국교회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원리는 명확하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 없으신 친구’이시다(마9:9-13)[채영삼, 2011: 182-194]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친구가 되는 일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동성애자들의 친구로 자처하면서 동성애를 죄로 보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친구에게 도움이 될 일이 없는 무익한 친구가 될 것이다. 반대로,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면서도 죄인들의 친구이셨던 주님처럼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교회의 품으로 품지 못한다면, 교회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과 정죄를 일삼으며 죄인들을 파멸시키는 자신들만 위하는 종교집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이 있고, 또 반드시 미워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 폐암에 걸린 사람이 술 담배를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 암을 미워하는 그의 미움



을 정복한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채영삼, 2016: 206-207, 강조는 본 연구자)<sup>11)</sup> 만약에 간음한 여인이 예수님과 만남 이후로 지속적(持續的)으로 간음을 하고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해방[性革命]을 주장하고 직접 길거리로 나가서 동성애뿐만 아니라, 모든 성적 자유를 예수님이 허용하셨다고 주장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하는 점이다.<sup>12)</sup>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하나님의 가르침에 일탈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는 ‘혼인 잔치 비유’(the parable of the wedding banquet, 마22:1-14; 눅14:15-24 참조)에서 그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논문 끝의 ‘사족 달기’에서 가볍게 논구하고자 한다.

동성애와 관련된 일부 극단적인 표현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성전 정화사건과 관련해 예수님의 모습을 근거로 해서 동성애에 대한 극단적인 발언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 성전 정화사건을 동성애와 관련된 일부 극단적 발언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동안 상대적으로 격(激)한 행동을 보이신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성전 정화사건이다.(Temple Cleansing, 요2:13-22; 마21:12-13; 막11:15-17; 눅 19:45-46 참조)<sup>13)·14)</sup> 다른 복음서 구절보다 요한복음은 성

11) 채영삼 (2011). 『승호의 목사 예수』. 이레서원, 2011.;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일시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환원하는 것은 위험하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위험이 있으며 이웃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못할 우려도 있다.”(문시영, 2021: 219 재인용; 이창호, 2020: 24) 이창호 (2020). 『사랑의 윤리: 사랑에 관한 신학적 윤리적 탐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2) 신현우 교수의 견해를 참조하라.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음행한 자들을 오히려 감싸고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한다면 이것은 성경을 역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반역하는 것이다. 교회 밖에 있는 동성애자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음행하는 있는 자들을 권면하고 치유하여야 하며, 회개를 거부하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주장하여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음행하는 경우에는 교회 밖으로 출교해야 한다.”(신현우, 2016: 128)

13) ‘성전 정화사건’ 기사에 대해서 버튼 맥(Burton Mack) 등과 같은 사람들은 그 역사성을 부인한다.(정기문, 2015: 8, 2번 각주; Mack, 1988: 292) 만약 성전 정화사건의 역사성을 부인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폭력성을 주장하는 기독교 안티(Anti-Christianity)의 주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Mack, Burton (1988). A Myth of Innocence : Mark and Christian Origins. Philadelphia: Fortress.

14) 때로는 세례 요한의 발언(마3:7, “독사의 자식들이”, Offspring of viper, Γεννηματα ἐχιδων, ‘You banim[sons] of nachashim[sankes]!’), OJB, Orthodox Jewish Bible)을 근거로 하여 과격한 발언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김기철은 이를 ‘죄악의 후손이여’라든가, ‘사악한 후손이요’ 등으로 순화된 해석이 필요함에 대해서 말한다.(김기철, 64-66 참조); 『위클리프 성경(Wycliffe Bible)』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읊고 있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7 But he saw many of the Pharisees and of Sadducees coming to his baptism, and said to them, Generation of adders, who showed to you to flee from the wrath that is to come?”(Matthew 3:7, WYC, Wycliffe Bible) 김기철 (1997). “질투 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고”. 『一粒論叢』. 5. 57-68.

전 정화사건에 대해 그 표현이 조금 더 격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렇기에 요한복음만을 참조할 경우 예수님의 행동이 상대적으로 과격한 행동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신현태, 2022: 106)<sup>15)</sup> 성전 정화사건에 대해 요한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의 기술과는 좀 다르게 노끈을 사용하여 채찍을 만들었다는 조금 강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강하게 기술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살펴보기로 하자.

15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엮으시고(요2:15, <개역개정>; ‘15 So he took some rope and made a whip.[“he made a whip out of cords” NIV] Then he chased everyone out of the temple, together with their sheep and cattle. He turned over the tables of the moneychangers and scattered their coins.’ John2:15, (CEV>, ‘15 밧줄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쫓아내시고 환금상들의 돈을 쏟아버리며 그 상을 둘러엮으셨다.’ <공동번역개정판>)

성전 경내에서의 ‘예수의 채찍 사용’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예수의 행동이며 이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듯 보인다. 이러한 예수의 모습은 복음서에서 보여지는 예수의 비폭력적인 모습과는 모순된다. 따라서 성전 경내에서의 예수의 채찍 사용이 비폭력적인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폭력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행동이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신현태, 2022: 103)

성전 사건(Jesus’ Temple action, 일반적으로 ‘성전 정화/청결 사건’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성전 사건의 주목적이 폭력과 거리가 먼 정화에 관한 사례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폭력과는 무관한 정화/청결의 사건으로 이해되고 있다)<sup>16)</sup>을 예수님의 폭력적 행위로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거나 이를 근거로 해서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기억한다면 성전 정화사건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도 폭력을 사용하셨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배정훈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는 당시 성전으로 상징되는 제의(祭儀)에 대한 비판적 행위였기 때문이다.(배정훈, 2021: 67-99)<sup>17)</sup> 그런 점

15) 다음을 참조하라. “요한복음서를 비롯한 모든 복음서들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몰아낸’ 예수의 행동을 묘사하는 데 공식적인 마귀추출을 뜻하는 ‘에크발로’(ekballo)를 사용하고 있다.”(Wink, 2005: 162). Ekballo는 ‘쫓아내다’는 복음서에서 마귀추출에 37번 사용되고 있다.(Wink, 2005: 163, 2장 63번 각주).

16) 참고로 성전 정화사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견해는 이태호(2012: 244-258, “2. 성전사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견해”)를 참조하라.

17) 배정훈 교수는 성전으로 상징되는 제의에 대한 비판으로 다음을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① 교회는 본질에 충실한 거룩한 교회로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한다. ② 교회는 만민으로 이루어진 차별 없는 공동체로서

에서 성전 정화사건에서의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이태호(2012)는 ‘선지자적 정의’ 개념에서 살펴볼 것을, 신현태는 “예수의 채찍질을 제의용 가축 ‘소’(β ο υς)와 ‘양’(π ρ ο β α τ ο υ)을 향한 것으로 한정하였음”을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폭력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지적은 참고할 만한 부분이다.(신현태, 2022: 98-130)<sup>18)</sup> 즉 예수님의 성전 정화 행동은 폭력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라는 지적이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사건이 그 어떠한 폭력적인 발언이나 행위의 정당화의 전거(典據)로 사용/惡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같은 의미에서 동물 학대라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나가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교회 공동체 내의 동성애에 대한 일부 극단적 발언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만나셨고 사랑으로 이들을 대하셨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에 대해 교회 공동체를 과잉대표하는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의 상식에서 벗어난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들의 극단적 발언에 대해서 ‘혐오’(phobia)라는 단어를 붙이기도 한다. 과잉대표하는 기독교 인사들의 동성애에 대한 극단적 발언으로 인해 안티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동성애 혐오를 지닌 집단으로 명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전광훈은 “동성애를 국가 질병으로 분류하고, 메르스나 한센병처럼 격리 치료하겠다”는 극단적 발언을 하였다.<sup>19)</sup> 고인이 된 금란교

---

하나가 되어야 한다. ③ 교회는 도둑의 소굴이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고 예배와 삶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④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개인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배정훈, 2021). “예수의 성전정화 사건이 한국 개신교 교회에 주는 교훈”. 『신학과교회』 . 16. 67-99

18)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ποιήσας φραγέλλιον ἐκ σχοινίων πάντας ἐξέβαλεν ἐκ τοῦ ἱεροῦ, τὰ τε πρόβατα και τοὺς βόας ...”, 요2:15a); “그렇다면 예수는 이 채찍을 누구에게 사용했을까? 채찍질의 대상은 오직 동물들이었을까? 비둘기에게는 사용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상인들에게까지 채찍을 사용했을까? 이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 다드(C. H. Dodd)는 예수의 채찍 대상에 소와 양은 포함되지만 상인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왜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펼쳐지는 것일까? 그것은 πάντας ... τὰ τε πρόβατα και τοὺς βόας의 문법적인 용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때문이다. 즉, πάντας가 가리키는 대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발생한다. ... 이 세 가지 언급을 통해 추론해 볼 때 많은 수의 동물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원하는 곳으로 돌아가기 위한 도구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신현태, 2022: 108, 111); “본 논문은 πάντας를 집합적인 용어를 지칭하는 대명사로 설정하고 τε ... και로 이루어진 부분 동격의 접속사와 연관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요한복음 2장 15절에 등장하는 예수의 채찍질을 제의용 가축 ‘소’(βοῦς)와 ‘양’(πρόβατον)을 향한 것으로 한정하였을 뿐 아니라 예수의 채찍질의 비폭력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신현태, 2022: 98, 자세한 것은 “3. 비폭력적인 행동인가 폭력의 정당성의 입증인가(요 2:15a)” 105-112 참조) 신현태 교수는 본문을 비폭력적으로 해석한다. 개인적으로 신 교수의 견해에 동의한다.

19) 이승규, “전광훈 목사, ‘동성애자 격리 치료하는 법 만들겠다’ <뉴컷뉴스> (2016.03.09.);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79&aid=0002807079>; “개신교가 유난히 동성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임보라 목사[친동성애성향 목사]는 ‘주적의 변동’이라며 성소수자에 대한 배타와 낙인과 차별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근현대사에서 한국 교회가 주적을 ‘빨갱이’으로 삼았다가 성소수자로 돌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대옥 목사[한동대

회 김홍도 목사의 경우도 과거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고 슬픔에 잠겨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전한다는 설교 시간을 통해 “태풍 카트리나는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장을 했었다.<sup>20)</sup>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팻 로버트슨(Pat Robertson) 목사는 허리케인 카트리나(Hurricane Katrina)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동성애 축제 장소에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셨다, 2005년에는 특별히 대규모의 축제를 기획 중이었는데 마침 이틀 전에 카트리나가 불어닥쳤다”라는 식의 극단적인 발언을 하였고, 제리 폴웰(Jerry Falwell)의 경우에도 2001년 9·11 테러 직후에는 이와 같은 테러가 미국에 일어난 것은 이교도들, 낙태, 페미니스트, 동성연애, 포르노들 때문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동성애에 대한 이러한 극단적 발언은 일반인들에게 거부감을 증가시킬 뿐이다.<sup>21)</sup> 이러한 극단적 발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와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전도의 문을 닫히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동성애가 죄인 것은 사실이지만 동성애가 죄라는 점과 그로 인한 발생하는 문제의 심각성은 사회에 메시지로 전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항상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말 그대로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다.)

## 2)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언급하신 예수

예수님이 율법교사(νομικός, nomikos, lawyer)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사마리아인 비유’로 눈을 돌려보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 비유의 본문에는 많은 연구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선한’(good)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지 않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참고로 본 단락의 제목을 역본들에 따라서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 사람’, <개역개정>, ‘착한 사마리아 사람’, <공동번역개정판>, ‘The Good Samaritan’, <CEV>로 쓰고 있다) 사실 당시 상황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은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 형용

---

조교수였던]는 ‘한국 교회가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인 사랑을 주장한 예수의 이름으로 가장 반예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사회적 설득력을 잃다 보니 기독교 옹호를 위해 내부 단속용으로 동성애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 본 연구자가 첨가); 전광준, “[뉴스AS] 동성애 지지엔 ‘이단’, 전광훈엔 ‘침묵’ ... 한국교회 이중잣대” <한겨레> (2020.10.21.); <http://v.media.daum.net/v/20201021105601853?f=o>

20) 자료는 권중술, “코로나19 확산은 하나님의 심판 ... 일부 개신교 목사들 설교 통해 유언비어 유포” <민중의소리> (2020.02.23.); <https://cp.news.search.daum.net/p/89925359>. 재인용. <포항지진 유언비어를 담은 메시지© 인터넷 캡처>

21) 우크라이나 정교회 키예프 총대주교인 필라레트 데니센코(91세)가 최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3월에 우크라이나 방송에서 코로나19에 대해 ‘인간의 죄에 대한 신의 형벌’이라면서 ‘나는 무엇보다도 동성 결혼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옥진, “별 받으셨네요... ‘코로나는 동성애에 대한 신의 형벌’ 종교 지도자 확진” <조선일보> (2020.09.10).

사와 명사”의 조합인 것이다.(전대경, 2017: 45) 사마리아인[쇼메로님 Shomeronim, ‘사마리아의 백성’이라는 뜻, 자신들은 스스로 ‘참된 율법의 수호자’란 뜻의 ‘샤메림’ Shamerim, 혹은 브네 이스라엘 Bene Yisrael/the sons of Israel 이라고도 함, 탈무드에서는 쿠틀(Kutim) 즉 ‘구다사람’으로 언급되고 있다.(장춘식, 2008: 85-86)]이란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거주한 혼혈된 북쪽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전대경, 2017: 38) 당시 정복자인 로마에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보다도 더 무시당했다고 한다.(장춘식, 2008; 전대경, 2017: 38, 10번 각주) 다음과 같은 문구는 당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잘 보여준다고 한다. “사마리아인들의 빵을 먹는 자는 돼지고기를 먹는 자와 같다.”<sup>22)</sup>(이민규, 2001: 87)는 말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었다. 그런 사회적 평가를 받은 사마리아인 앞에 ‘선한’이라는 단어를 본문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후대 사람들이 붙인 것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조금은 설교조의 기술인지 몰라도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사회적 공신력이 저하된 시점에서 떨어진 공신력을 회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 사마리아인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문시영, 2021: “II-2. 사회적 영성의 기원: 선한 사마리아인 제자도.” 215-232 참조) 삶에서 부족한 필요(needs)가 있는 이들에게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런 점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기독교사회복지에 있어서 모범적인 사회복지사의 사례로 바라보는 연구자도 있는 것 같다.]<sup>23)·24)·25)</sup>

그렇다면 ‘어떤 사람’(ἄνθρωπος τις, a man, 즉 강도를 만난 사람)(30절)은 과연

22) “랍비 엘리에젤의 ‘사마리아인들의[구운] 빵을 먹는 자는 돼지고기를 먹는 자와 같다’라는 할라카가 명시하는 바와 같이, 사마리아인들의 모든 것은 부정한 것으로 낙인찍혀 버린 것이다.”(장춘식, 2008: 93 재인용)

23) 김관임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식물과 동물,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고,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살 수 있도록 먹을거리까지 배려하시는 분(창 1:29)이기 때문에 하나님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30-35)를 통해 분명히 전달되고 있다.”(김관임, 2009: 26)

24)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곤경에 빠진 상대의 물질적, 신체적,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라고 하면서 이웃사랑의 방법뿐 아니라 대상을 제한하지 말라고 하셨다.”(김성민, 2017: 100)

25) 전명수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한다. “여기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한 사람들은 제사장과 종교적 임무를 주관하는 레위족의 사람으로, 두 사람은 율법에 기반한 신학적인 무장을 단단히 하고 있는 이들이었다. 반면 사마리아인은 율법과는 거리가 먼 이방인인데 오히려 피해자를 불쌍히 여겨 보살피주는 복지적 행동을 보여준 것이다. 이것은 종교의 이념이 곧 사회복지의 실천이 아니라는 것, 실천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기 부여, 그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전명수, 2015: 75)

누구인가? 즉 우리의 이웃(π λ η σ ί ο ν)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이다.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동성애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떤 사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일까? 손혜숙 교수는 동성애자를 우리의 이웃에서 배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손 교수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교회도 동성애자를 사역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수의 사역은 동성애를 배제한다 ... 간단히 말하면, 예수의 사역은 이 시대에 우리가 부딪치고 있는 동성애, 성전환, 양성애, 성소수자(LGBTQ+) 등을 배제한다. 오늘날 교회들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의 사역을 이어받아 수행한다.”(손혜숙, 2019: 48-49)<sup>26)</sup> 과연 손혜숙 교수의 말처럼 예수님이 동성애자를 배제하셨을까? 동성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이 아닌가? 중요한 것은 동성애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에서 가르쳐 주는 이웃의 범위에서 동성애자들은 배제되는 것일까? 이웃에 대한 물음과 답변에 대한 헬라이어 문법적 분석을 통해 전대경(2017: 33 참조)은 이웃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웃은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웃됨(neighboring)은 친척이나 친구의 범위를 넘어선 전체 인류에게까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문시영, 2021: 217 참조)<sup>27)</sup>

헬라이어 문법적 연구를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랍비는 예수께 “누가 ‘나의’[μου, mou] 이웃입니까?”라고 소유격[genitive]으로 묻지만, 예수는 “누가 ‘너에게’[σοι, soi] 이웃이 되느냐?”라며 여격[dative]으로 답한다. 즉, 이웃은 내가 규정하는 객체가 아니라, 이웃은 주체이다. 이웃의 범위를, 과거의 유대인들이나 오늘날의 우리들처럼,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이웃이 되는 것이 “이웃됨”이라는 것이다(전대경, 2017: 33, [ ] 본연구자 추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도 예수의 조건 없는 사랑의 도리를 찾을 수 있다(눅 10:30-37)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 줄 때 어떤 인종인가를 먼저 확인한 후에 구해 주었는가? 어떤 종교인가를 확인한 후에 자비를 베풀었는가? 그는 인종 종교 문화 빈부의 차별 없이 무조건적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 무조건적 사랑의 손길은 인류

26) 손호현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라디아서 3:28)라고 바울은 말한다. 여기에 ‘동성애자나 이성애자나’를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손호현, 2017: 161) 원론적으로는 물론 맞는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성애자를 배제하지 않으신다.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안에(in Christ) 오는 이들이 자신의 명령을 준행하길 원하신다.

27) “이웃됨의 개념은 친구나 친척에게 국한되지 않고 전체 인류에 해당한다는 칼빙의 통찰은 이후 율리히(Adolf Julicher)에게서 결실을 맺는다.”(문시영, 2021: 217)

를 구원할 수 있는 종교가 될 수 있다.(조찬선, 2001: 236-237)

원조가 필요한 ‘어떤 사람’에게 주위의 사람들은 왜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까? 제사장(Priest)과 레위인(Temple helper) 그리고 사마리아인(Samaritan)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이준호(2022)는 인물, 동작, 관찰, 그리고 반응을 [표: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태도]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불쌍히 여[기]”<sup>28)</sup>(33절,  $\kappa \alpha \iota \iota \delta \omega \nu \acute{\epsilon} \sigma \pi \lambda \alpha \gamma \chi \nu \acute{\iota} \sigma \theta \eta$ , [http://app.alphalef.com/], “he felt sorry for him“, <CEV>, “he had compassion on him” <KJV>, “he took pity on him.” (NIV), “He saw the man and wanted to share in his troubles.” <WE, Worldwide English>, “he saw him, and had ruth on him;” <WYC, Wycliffe Bible>, “he was filled with rachmei shomayim[heavenly compassion, mercy].” <OJB, Orthodox Jewish Bible> [ ]는 본 연구자 추가)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어지는 단어라고 한다. “어떤 사마리아인의 동정심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불쌍히 여겨’(σπλάγχθυσις ομοαλι)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예수의 성품을 보여줄 때 자주 등장한다.”(이준호, 2022: 78)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태도를 보면 ‘반응’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두 다 그 사건을 동일하게 목격했다(‘보다[고]’, ὁράω),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장소를 ‘피하여 지나가고’(ἀντιπαρέρχομαι, [antiparerchomai]) 사마리아인만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다. 사마리아인이 당시에 품었던 불쌍히 여긴 마음은 무슨/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데 자주 사용하는 불쌍히 여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원론적 대답으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엄마의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주석을 달 수 없으나 과거에 읽었던 의료윤리에 관한 책에서 지은 이가 의료행위에서 엄마/[가족?]와 같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환자에 대해서 엄마와 같은 마음을 의사들이 지닌다면 과잉진료 등과 같은 잘못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너무 감정적인 얘기일 수 있으나 엄마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강도를 만난 사람에 대해서 쉽게 외면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

28) “공활은 선한 일을 하는 행위(doing good)와 좋은 사람으로서의 그들 자신에 대한 인식과 표출(being good)로 구성된다(Blackstone, 2009: 95-106).”(전명수, 2015: 75-76); Blackstone, Amy (2009). “Doing Good, Being Good,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Compassion.” *Journal of Contemporary Ethnography*. 38(1). 85-116.

[표: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태도]

인물	동작	관찰	반응
제사장	내려가다가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31절)
레위인	이르러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32절)
사마리아인	이르러	보고	불쌍히 여겨(33절)

자료: 이준호(2022: 76, 제목은 본연구자 첨가)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가 근본적으로 영생(永生, eternal life)에 대한 물음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영생은 행함[의로운 삶, 윤리적 삶]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25절, “what must I do to have eternal life?”, <CEV>)는 질문으로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가 진행되었고 그 대화 가운데 사마리아인 비유가 언급되었다는 것이다. 이민규 교수도 사마리아인 비유의 요점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바로 이 율법사가 던진 질문에 대한 예수의 답변이며 그 요점은 37절에 요약되어 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이민규, 2001: 74)

교회 공동체가 주의해야 할 것은 믿음과 행위를 극단적으로 구별/分離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과거 생식과 성적 즐거움의 극단적 분리가 성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歪曲을 발생케 하였던 것처럼 믿음과 행위를 극단적으로 구분함으로써 문제를 낳는다는 것이다. 복음서는 구원과 관련해서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얘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기술되어 있다. 반면에 서신서들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으로 드러나고 있다. 왜 이런 차이나는 언급/내용들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것일까? 개인적인 견해에 의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다. 그들은 유대인으로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들이다. 예수님의 대화의 대상이었던 율법사도 그런 유(類)의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영생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한 질문/試驗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25절, <개역개정>),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공동번역 개정판>) 율법사와 같은 무리들은 자신들이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인지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였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이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견해를 지니고 있는



율법교사와 같은 무리-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지닌 사람들에게-에게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행함(praxis)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다. “이를 행하라(π ο ι έω) 그러면 살리라”(28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π ο ι έω)”(37절)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칭의론(justification by faith alone)에 대한 것으로 교회 공동체의 칭의<sup>29)</sup>에 대한 이해가 구원파[이단 구원파]의 주장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세운 박사에 의하면 교회 공동체가 칭의를 법정적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관계론적 개념을 도외시켰다는 것이다. 그 결과 칭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왜곡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지적이다. 권연경 교수의 지적도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칭의의 복음의 이러한 관계론적 의미를 모르는 많은 한국 목사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밝히며 그것이 요구하는 “의인이라 칭함 받은 자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행위로 의인되려 한다고 비판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은혜로만/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의 복음을 ‘의로운 삶(윤리)이 없는 의인 됨’을 뜻하는 복음으로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김세운, 2013: 20)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 틀린 것처럼, ‘행위 없이’ 구원 얻는다는 말 또한 틀렸다. 말하자면 현재의 행위는 구원에 이르는 ‘필수적 과정’과 같다. 물론 이 과정을 건너뛰고 구원에 이를 방도는 없다.(권연경, 2013: 89)

예수님의 율법 교사와의 대화에서 예로 든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바로 칭의를 받은 자에게 의로운 삶(실천하는 믿음)을 살아야 함에 대한 지적이다.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끝나지 않고/말고 더 나아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지속적인 성화(聖化)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칭의 이후의 행함을 통한 성화의 삶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러면 가서 몸으로 직접 행동/實踐하라는 것이다.

---

29) 참고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자처하는 교회가 사회로부터 ‘개독교’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얻은 것은 우리의 신학적 무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바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권연경, 2013: 78):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초기에는 야고보서 저작권과 정경성을 의심했지만, 후기에는 설교와 주석을 통해 야고보서의 정경성을 인정할 뿐 아니라,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행함이 온전한 믿음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본다.”(전대경, 2017: 44; Luther, 1890: 31-32) Luther, Martin (1830). A Selection of the Most Celebrated Sermons of Martin Luther. K. Zimmermann (ed). and Malcolm (trans). New York: S. & D. A. Forbes. 31-32.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런 질문도 필요하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도움을 주지 않고 피하여 지나갔느냐는 것이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러한 행동을 행한 것에는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학자들은 제사장이 왜 피해갔는지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다. 첫째는 그 사람이 죽었다고 판단하고 시체에 손을 대서 몸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이다. 레위기 21장 1절에는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니와”라고 기록한다. 레위인과 제사장 입장에서는 율법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반응이었을 것이다. 둘째로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동안 강도를 만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버렸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 외에도 혹자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죄인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를 도와주는 것 자체를 꺼려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한다. 우리가 그에 대한 정확한 동기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의 생사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최원진, 2020: 441-442)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처럼 동성애에 대한 교회 공동체 내에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그러한 견해를 가지는 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 이유 중에는 동성애를 성경에서 신약적 의미의 죄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동성애는 죄다-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다. 자신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더 나아가서 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더 격한 말로 주장하다 보니 일반인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에 ‘혐오’처럼 들리기도 했을 것이다.[물론 일부에서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하는 이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다] 동성애에 대해 그러한 행동과 생각을 하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동성애자를 대하라는 것이다.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비유에 등장한 인물들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들의 내집단(Ingroup)의 구성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하는 것이다. 먼저 레위인과 제사장의 행동은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상상력을 다시 발휘해 보자. “죄를 죄라고 하는데 그 무슨 문제냐고 ... 해야 할 말을 잘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심지어 더 격/過激한 내 집단 구성원들은 “왜 그렇게 밋밋한 진술을 했느냐.”는 비난과 함께 “좀 더 과격하고 강하게 하라.”는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비록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에는 잘못된 것은 없으나 “그래도 조금은 좀 순화(純化)된 표현을 했으면 한다.”며 좀 아쉬움을 드러내는 유화적(宥和的)인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어떤 평

가를 받았을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마리아인의 행동에 ‘선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그의 행위를 긍정적으로 기념한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밖의 사람들도 이 비유를 기억하여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사마리아인의 선한 행동이 그의 내(內)집단에서 전적으로 강한 지지만을 받았을까? “왜 우리하고 사이도 좋지 않은 그들을 그렇게 선대했냐”고 반문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며, 또 다른 이들은 “그래 잘했어. 저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한 인간으로 참 잘했어”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부여하는 이들도 존재하였을지도 모른다. 동성애에 대한 다양한 견해로 인해서, 이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하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극단적인 찬성과 극단적인 반대 사이에 다양한 견해/스펙트럼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을까?(WWJD)라는 물음에 충실한 행동과 발언을 해야 할 것이다.<sup>30)</sup>

율법 교사(expert in the law)가 예수님을 시험(test)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반문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는지? 율법 교사는 사랑하라고 답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가 아는 것처럼 사랑을 행하라고 명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율법 교사는 그것으로 마음이 차지 않았던지, 아니면 무언가 말꼬투리를 잡기 위해서인지, 그것도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다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다. 내 이웃이 누구냐고 말이다. 그 때에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에게 들려주셨다. 제사장은 이런 행동을, 레위인은 이런 행동을, 사마리아인은 이런 행동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가 동성애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율법 교사에게 반문하셨다. 율법 교사는 자비를 행한 자, 즉 사마리아인이 동성애자의 이웃이 된다고는 말을 하지 못하고

30) ‘2019년 한국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을 조사한 한국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젠더 영역<발제5. 사회(젠더)>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성애가 죄인가”라는 질문에 개신교인 58.4%, 비개신교인 25.0%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예수님이라면 동성애자를 어떻게 대할 거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개신교인은 “동성애를 수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라는 응답이 38.4%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와 “그에게 죄에 대한 회개를 요구한다”라는 응답이 각각 27.0%와 26.2%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비개신교인은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가 63.7%로 나왔다(송진순, 2020: 51-57) 개인적으로 질문에서 동성애가 죄인가라는 것보다 “동성애가 신앙적 의미의 죄인가”라고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인/비개신교인들의 경우, 실정법상의 죄/범죄와 신앙적 죄를 혼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성애나 성전환의 문제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묻는 경우에,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위배된다고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시민사회로부터는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공공의 언어를 사용하여 기독교의 관점을 말하는 것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기는 하지만 기독교의 정체성에도 부합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문시영, 2009: 220)

다만, 자비를 베푸는 자가 그의 이웃이라고 답하였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알았으면 너도 가서 동성애자에게도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심으로 대화를 마쳤다.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내용을 이준호 교수가 자신의 논문을 통해 기술했던 내용에 근거해서 [표]로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예수님과 율법사(nomikos)와의 대화]	[표: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대화]
<p>A.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25절)</p> <p>B.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반문(26절)</p> <p>C.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대답(27절)</p> <p>D.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명령(28절)</p>	<p>A. “내가 무엇을 하여야(ποιέω)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25절)</p> <p>B.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반문(26절)</p> <p>C.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대답(27절)</p> <p>D. “이를 행하라(ποιέω) 그러면 살리라” 명령(28절)</p>
<p>A'.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질문(29절)</p> <p>B'.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반문(36절)</p> <p>C'.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대답(37절)</p> <p>D'.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명령(37절)</p>	<p>A'. “내 이웃(πλησίον)이 누구니이까?” 질문(29절)</p> <p>B'. “누가 동성애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반문(36절)</p> <p>C'. “자비를 베푸는(ποιέω) 자니이다” 대답(37절)</p> <p>D'.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ποιέω)” 명령(37절)</p>

자료: 이준호(2022: 62-63 참조 재구성, 제목은 본연구자)

## 2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재고

### 1) 먼저 교회 공동체에서 동성애는 권리/인권의 문제가 아님

앞에서 언급했듯이 동성애는 신앙적인 죄로 성적 일탈행위의 한 행태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신 합법적인 성관계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제도[公開性·排他性] 안에서 이루어진 부부관계의 남녀 한 쌍[永久性·完全性] 사이에서 생식(生殖, procreation)과 성적 즐거움(快樂, pleasure)을 위해 이루어지는 성행위만을 말하기 때문이다.(Stott, 2011; 강상우, 2022 참조) 동성애는 이와 같은 성경의 성행위에 대한 가르침에서 일탈했기 때문에 동성애는 성적 일탈행위의 한 행태가 되는 것이다. 동성애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성적 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권리(權利)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sup>31)</sup> 김영한 전(前)교수는 존 스토틀

트 목사의 말을 인용하며 동성애를 권리로 주장할 수 없음을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sup>32)</sup>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스타트(J. Stott)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권리’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Stott, 2011: 224]. 동성애자를 노예, 흑인, 여성해방과 유비(類比)관계로 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아니다. 노예제도, 흑인차별, 여성차별 등은 창조 질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악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게이 내지 레즈비언 해방이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인간의 의지적 반항(게이와 레즈비언 행위)에서 해방되는 것이다.(김영환, 2016: 295, 강조와 [ ] 첨가와 강조는 본 연구자)<sup>33)</sup>

김일수 고려대학교 법학과 전 교수는 동성애자를 ‘자발적 소수자’로 구분함으로써 이들의 일반적인 의미의 소수자의 범주에서 벗어난 이들로 본다는 점이다.(사회적 소수자≠자발적 소수자[동성애자]) “이 중에서 주목할 점은 동성애자와 성적 소수자 그리고 종교적 병역 거부자 같은 이른바 ‘자발적 소수자’ 그룹의 과감한 출현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회에서 냉대와 차별을 받는 소수자임을 담대하게 밝히며, 또 그런 소수자에게 속한 부류의 사람임을 천명하면서,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사회에서 다수의 보편윤리와 지배적인 법의식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들의 특징은 다 같이 탈물질적이고 탈중심적이고 탈근대적인 사회의 조류와 일맥상통한다.”(김일수, 2019: 79) 김일수 교수는 계속해서 동성애의 권리/人權 인정이라는 것이 인권 적격성(人權 適格性 缺如)이 없는 허구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적 영역의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동성애는 기껏 하여 사적 영역에서 묵인될 수 있는 정도에 머물 수는 있어도, 공적 영역에서 권리나 제도로 승인될 성질의 것은 못 된다.”(김일수, 2019: 318)<sup>34)</sup> 참고로 동성애 문제는 다른 소수자 문제와 성질이 다른

31) 손호현은 인권을 법률적 인권과 신학적 인권으로 구분한다. 법률적 인권은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부침을 가지는 상대적 권리인 것에 비해서, 신학적 인권은 은총에 기초하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 인권이라는 것이다.(손호현, 2017)

32) 동성애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회복지에서도 다른 접근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권 담론에서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다원주의적 이념을 근거로 한 다양성의 의제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성애 친화적 모델(gay affirmative model), 혹은 문화적 역량모델(cultural competent model)이다.”(성정숙·이나영, 2010: 20)

33) Stott, John R. W. (2006). Issues Facing Christian Today. Grand Rapids, MI: Zondervan. 정옥배 역 (2011). 『현대 사회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서울: IVP.

34) 김일수 교수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1) 인권적격성의 요구(316), 2) 公序良俗에 반하는 법률은 악법(317), 3) 동성애 권리주장은 인권 적격성 없는 허구(317), 4) 그들만의 법은 법의 자격이 없다.(318), 5) 동성애의 형사처벌은 과잉입법(319), 6) 헌법과 가족법상의 동성혼 승인은 법의 타락이다.(320), 7) 동성애의 합법화 시도는 입법자와 법관의 직권남용이다.(320)(김일수, 2019: 316-320 요약, ( ) 안의 숫자는 페이지 수다)

것은 바로 종교/信仰이 작동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다른 소수자 문제와 달리 동성애 이슈의 경우 인간의 기본권 이외에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가치 판단의 측면이 포함되어 있고 그로 인해 종교적 믿음이 동성애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Shaiko 2007; 서현진 2003)”는 점에서 동성애 문제가 다른 소수자 문제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정옥화·김윤실·윤종빈, 2016: 127)<sup>35)</sup>

교회 공동체에서 동성애란 권리가 될 수 없다. 동성애가 권리가 될 수 없다고 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극단적인 표현(嫌惡性發言)을 하거나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재현 교수가 죄를 근원적인 죄(The Sin)와 죄/죄들(a sin/sins)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음에 대해서 기술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동성애는 근원적인 죄가 아닌, 파생된 죄로서 성적 일탈행위의 한 유형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록 동성애가 죄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궁극적 원인은 아니라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근원적인 죄(The Sin)와 그로 인해 파생된 죄들(sins)을 구분하지 않으면 몇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가장 혼란의 문제는 파생적 죄들을 해결하는 것을 구원으로 오해하는 경우이다. 물론 파생적 죄들이 윤리와 관련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회개의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참다운 구원은 없다.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다. 동성애는 죄다. 하지만 파생적인 죄들 중 하나이기에 동성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이재현, 2016: 180-181, 강조는 본 연구자)

성경의 가르침이 적용되는 대상은 누구인가? 성경의 가르침은 일반인들에게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의 소망 사항에 불과할 뿐이다. 신정정치를 얘기하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겠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점이다. 과거 신정정치를 떠오르게 하는 구약시대라든가 중세 서양(Christendom)의 경우에는 성경의 가르침이 사회 구성원을 구속하는 규정이 될 수 있었지만—이 경우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것이 기독교의 흑역사(Black chapter)로 불리워지는 사건들이다—오늘날에는 그러한 사회 환경이 전혀 아니라는 점이다.(참고로 오늘날 이슬람 사회의 정교일치의 사회이기 때

---

35) 서현진 (2003). “미국의 소수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동성애자 권리문제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3(4), 269-293.; 정옥화·김윤실·윤종빈 (2016). “미국인들의 동성애자와 동성결혼 이슈에 대한 태도 연구”. 『東西研究』 . 28(2). 123-150.

문에 여전히 이슬람 사회에는 샤리아[Shari'ah, شريعة]라는 이슬람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1 법원인 꾸란이나 제2 법원인 하디드에서 벗어난 행위들은 처벌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문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속국가의 무슬림에게 사하라를 적용하려고 하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나라는 정교일치가 아닌 정교분리가 된 사회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일반인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으며 심지어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또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이들에게조차도 동성애에 대해서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동성애와 관련된 성경 본문에 대해서 게이리딩과 퀴어리딩을 하는 소수의 수정주의자들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안타깝게도 교회 공동체의 동성애는 신앙적인 죄라는 전통/정통주의적 주장도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다.

## 2) 여론과 사회적 공신력이 중요한 환경에 처함<sup>36)</sup>

그렇다면 오늘날 정교분리의 사회에서 동성애가 권리/인권이나 아니냐의 문제는 어디에서 결정될까? 법률 제정으로 인해서 실정법상 보호받는 권리가 되느냐 안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다.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고 그 여론이 사회적 아젠다가 되어 법률로 규정될 때에 사회적 권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다.(유성진, 2015: 177 참조)<sup>37)</sup> 법률의 제정은 입법부에서 행해진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일부 사람들은 입법부의 국회의원의 종교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리스도인 국회의원의 당선에 주목/기대한다. 그래서 과거 ‘(기독교

36) “동성애에 대한 연구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연구하고 있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 Satinover 박사는 DSM에서 동성애를 제외시킨 미국 정신의학회의 결정은 과학적인 증거 없이 전적으로 정치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임을 주장하면서, 투표에 부치기 전에 이미 밀실에서 비밀리 합의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임준섭, 2019: 48). “우리는 동성애가 불변하는 것이라는 정치적 운동가들의 거듭된 주장의 그릇된 과오를 훗날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과학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내놓았다는 거짓된 인상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거의 확실히 그런 것은 없다. 대신에, 모든 대중과 전문가의 의식에 변화를 주는 것은 정치적이며, 언론과 여론의 관계 속에서 비롯된 것이다(We will see later the falsity of activists' repeated assertions that homosexuality is immutable. They seek to create the impression that science has settled these questions, but it most certainly has not. Instead, the changes that have occurred in both public and professional opinion have resulted from politics, pressure, and public relations).”(Satinover, 1996: 38; 임준섭, 2019: 48, 40번 각주 재인용); Satinover, Jeffery (1996). *Homosexuality and the Politics of Truth*. Grand Rapids, Michigan: Hamewith Books, Baker Books.

37) “미국사회의 대표적인 가치갈등 이슈 중 하나 인 동성결혼 문제는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동성애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사회 여론의 변화, 사회적 소수집 단의 하나로 시민으로서의 권리보장이라는 새 로운 프레임으로 논쟁의 초점을 재편한 우호집 단들의 노력,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이 이를 적극적으로 정치 쟁점화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낸 과정이 있었다.”(유성진, 2015: 177)

교) 장로/집사를 대통령/국회의원으로'라는 구호를 해 댄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현실에서 대부분의 국회의원/정치인은 자신의 종교적 가르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라는 점이다. 오로지 자신들의 당선을 목표로-이해관계에 따라서-움직이는 이들이라는 것이다.<sup>38)</sup> 말 그대로 이들 대부분이 신앙인이기 전에 자신의 당선과 재선만을 쳐다보는 한 정치인에 불과하다는 점이다.(정치인인 이분들은 오늘날의 기독교의 정치적 연대보다는 기독교의 이단으로 불리워지는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집단들이 연대가 더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코로나[COVID-19] 사태를 통해서 이를 더 확신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정치인이라는 이들은 기독교보다는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집단의 눈치를 상대적으로 더 보게 될지도 모른다. 심지어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라면 이단들과도 쉽게 손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사회 여론을 더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공신력의 회복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동성애에 대한 극단적 발언에 대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스스로 자정(自淨)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을 법률로 제정됨으로써 비성경적 가치를 조장(助長)해서는 안될 것이며, 적극적으로 기독교적 가치를 세상에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론에도 집중해야 하며 교회 공동체의 사회적 공신력의 회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이다.

### 3)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재고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 동성결혼<sup>39)·40)</sup>을 법률로 인

38) 오바마 대통령의 사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Lee, Carol E. (2012, 10 May). "Obama Backs Gay Marriage." The Wall Street Journal; <http://www.wsj.com/articles/SB10001424052702304070304577394332545729926>; 2015년 6월 26일 동성결혼에 관하여 Obergefell v. Hodges 사건의 선고가 있었고 오바마 대통령은 판결 선고를 듣고 원고인 James Obergefell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직접 걸어 축하했다고 한다.

39)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민은 스스로 혼인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혼인을 함에 있어서도 그 시기는 물론 상대방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결정에 따라 혼인과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1997. 7. 16. 선고 96헌가6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으로 인하여 동성 간의 혼인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확설은 대답하고 있다."(차선자, 2017: 93, [ ] 본연구자 첨가)

40) "동성 간 결혼할 권리"를 옹호하는 이들의 주장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약 결혼이 전적으로 그 스스로에게만 떠맡겨진 '개인의 사적인 일'이라면 제3자로 하여금 결혼의 목적과 동성애의 도덕성에 대해 윤리적, 사회적, 종교적 논란에 개입할 여지를 상실케 한다. 둘째, 이들의 논거는 결혼 당사자 2명의 '현재의 행복'이라는 조건에 초점을 맞출 뿐 가정에서 양육될 아이를 포함 한 세대를 넘는 연속성에 대한 고려는 충분치 못하다. 셋째, 혼인제도는 처음부터 이성 간 파트너십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기에 동성결혼의 제도화는



정할 경우 비성경적 가치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인 교회 공동체 구성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동성결혼이 법률로 규정된다는 것은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許容/조장하는 신호/雰圍氣를 사회의 구성원에게 보내기 때문이다. 성적 이탈행위의 한 유형인 간통의 경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자.('간통죄' 형법 제241조 삭제 [2016.1.6.]) 법률로 제정[犯罪化]되거나 폐지될 때[非犯罪化] 또는 제정되지 않았을 경우 [未犯罪化]로 나누어서 이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이소영, 2007: 376-384, "Ⅱ. 동성애에의 법적 개입의 역사" 참조)<sup>41)</sup> 먼저 법률로 제정되지 않았을 경우[未法制化/未犯罪化] 간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미풍양속이라고 해야할까 아니면 윤리/도덕이라고 해야할까? 특히 일부일처제가 확립된 사회에서는 간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적었을 것이다. 물론 다양한 인간이 사는 데 간통이라는 것은 없을 수는 없겠지만—'오쟁이지다', '오쟁이 진 남편'이라는 말이 존재하는 것처럼—간통이 사회적으로 뭐라고(違·適法) 말할 수 없지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간통] 부정적인 것=피해야 하는 것, 다른 이/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행위/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다.[姦通非犯罪化 境遇]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간통이 법률화되었다. 실정법에 의해 상간자들을 처벌하게 되었다. 범죄화될 경우 간통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간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마 간통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억제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간통은 자랑거리의 될 수 없으며 간통을 하더라도 내놓고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간통=범죄=처벌받는 불법행위, 그래서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소심한 이들은 처벌이 두려워서 또는 자신의 위신(威信)을 염려한 가운데 스스로 상간(相姦)을 억제하게 되었을 것이다.[姦通犯罪化 境遇] 오늘날처럼 간통이 비범죄화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 그것도 간통이 범죄화되었다가 비범죄화된 경우는 어떨을까 하는 점이다. 과거 간통이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간통이 이제는 범죄가 아니다. 그러면 어떨까? 여성주의자들이 주장/우려하는 것처럼, 특히 팔루스(Phallus)가 강조되는 남성중심

---

얼핏 보면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적인 처우를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하려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형태의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다."(권혁남, 2018, 1063)

41) 1. 법적 규제단계: '범죄'로서 동성애, 2. 법적 승인단계: 동성애의 비범죄화, 3. 법적 보장단계: 동성애결합의 정상화로 구분한다. "근대 서구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법적 개입의 역사를—다소 무리해서—도식화하자면, 첫 단계에는 동성애자라는 사실로만 법적 처벌이 가해졌고, 이는 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해야 할 종교적정지적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동성애 X, 동성애혼인 X).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동성애를—직접적으로든 우회적으로든—범죄화하는 법제들을 폐지하고 '다름'을 승인해 주는 데까지 이르지만, 그것이 정상가족을 교란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동성애 O, 동성애혼인 X). 그렇기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이성애자들과 동등(혹은 유사)하게 인정해줄 것이, 즉 정상화해줄 것이 주장된다고(동성애 O, 동성애혼인 O) 하겠다."(이소영, 2007: 384); "어느 한 사회가 동성 간의 결합을 대하는 태도에는 (i) 적대, (ii) 무시, (iii) 관심, (iv) 사회적 합의, (v) 법적 승인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김민중, 2016: 234)

적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간통은 왜곡된 팔루스의 힘(?)을 상징/자랑하는 사건으로 둔갑(遁甲)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군이라는 특수한 집단에서 성적인 이야기가 영웅시되는 것처럼 어느 특정 집단에서는 간통이 영웅적 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너무 상상력이 풍부한 것인지는 몰라도, 간통이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통은 죄, 범죄가 아니잖아, 이미 형법에서 삭제됐데.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네”가 되고 스스로 간통에 대해서 무장해제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과거 상간을 범한 자들도 자신의 과거의 처벌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과거 행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발언하는 이들도 있게 될 것이다. 과거 자신의 상간으로 인해서 배우자나 가족에게 많은 고민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는 남자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같은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간통죄의 비범죄화는 귀책 사유와는 관계없이 ‘가진 자(The Haves)와 가지지 못한 자(The Have-Nots)’ 간에 힘의 논리로만 작동하게 될 것이다.<sup>42)</sup> 귀책 사유가 있는 자가 상대적으로 ‘가진 자’인 경우에는 자신의 간통행위에 대해서 도리어 더 큰 소리를 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억울해도 가지지 못한 자는 구제 받는 것이 더 어렵게 될 것이다. “알아서, 뭐가 문제여! 위자료[돈] 받고 떨어져!”라는 식의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될 것이다. 간통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교회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극단적으로 말해 간통을 범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에 대해서 권징(勸善懲惡)을 행할 경우 과거와는 다른 교회 공동체의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성적 일탈행위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과 거리가 먼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약간 옆길로 간 것 같지만 목회자들의 성범죄/성폭력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한 가운데 교회가 간통을 범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권징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성폭력이 범한 그 목회자가 속한 당회가 주도적으로 행하려고 한다면—이 경우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그 목회자가 당회의 장(長), 즉 당회장이 된다는 점이다—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코미디 프로에서나 나올 법한 대사인 “무슨 개소리야.”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아니면 영화 속의 대사로 유명한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기독교 안티(Anti-Christianity)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게 될 것이다. ““성범죄/성폭력 목회자=실정법 위반=무처벌”, ‘간통 범한 교회 공동체 구성원=실정법 무위반=처벌(권징)’ 이것이 말이나 되냐.” 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의 공신력은

42) 간통죄 폐지의 근거로 사용된 논리는 “실제로 간통죄가 여성을 보호할 수 없고, 오히려 남성보다는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간통죄로 기소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 이유였다.(권혁남, 2015: 225) 그러나 현실은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개인적으로 든다. 왜냐하면 경제적·사회적 약자=여성이라는 도식은 매우 환원적이기 때문이다.

하자 있는 메신저들(목회자)과 그들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침묵으로 인해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야, 모두 귀 막아야, 저 사람이 성폭력을 했는데! 저런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다고?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또라이 아니여?”라고 반문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sup>43)</sup>

그러면 친동성애자들과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동성결혼의 합법화되면 어떤 일이 발생 하게 될까?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살펴보기 이전에 동성애에 대한 사회의 인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참고로 동성애에 대한 범죄화는 현 군형법 제92조의6에 규정되어 있을 뿐 일반 인들에게는 비범죄화되어 있다.<sup>44)</sup> 실정법에는 일반인들을 위한 동성애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인이라는 특별권력관계(Ludwig Wenninger)에 속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동성애로 인한 법률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동성애의 합법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서양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된다. 동성혼의 합법화가 다른 부정적인 효과 들을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하면 어떤 이들은 ‘미끄러운 경사면’(slippery slope)의 오류라고 지적한다. 그런데 동성애에 대한 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를 눈으로 본 교회 공동체는 미끄러운 경사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외국의 ‘[동성혼] 합법화 ⇨ 법적 보장 ⇨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동성애 부부의 입양, 대리모, 인공수정과 같은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 하였기 때문이다.(동성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김만중, 2016: 191-240 참조; 최근 레즈비인 1호 부부로 알려진 김규진 씨가 득녀를 했다.<sup>45)</sup>) 확실한 것은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동성애의 조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만은 사실일 것이다. 서양에서

43) 개인적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여했을 때에 예비군 대장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 “누구 목사가 이런 일을 했다고 보도되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의 얘기를 많이 하셨다.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심지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스갯소리로 자기 아내나 딸은 교회에 안 보낸다고 한다. 전OO 같은 목사에게 세뇌(洗腦, brainwash, 또는 gaslighting) 당해 뺨스를 내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란단다. 지금 세상에 아내가 바람나 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웃픈 소리였다.

44) “헌법재판소는 2002년, 2011년,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해당 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렸으며, 동성간 성행위를 뜻하는 계간이라는 용어는 삭제되었지만 현 군형법 제92조의 6의 그 밖의 추행에 동성간 성행위도 포함된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군대 내 동성애 행위 처벌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 및 군기의 보호와 국가안보 라는 공익에 비해 군인들이 받게 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현재 2011. 3. 31. 선고 2008헌가21 결정.”(신영현, 2016: 173, 98번 각주); 권순현 교수는 합의에 의한 경우까지 처벌되는 현행 군형법상의 추행죄는 폐지하고 별도의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군형법에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권순현, 2019: 309).; 손지수·김지관 (2016). “군인의 역할로 본 군형법 제92조의 6”. 『인문사회 21』 . 7(4). 585-601 참조.

45) <https://v.daum.net/v/20230830172115795?f=o>.

동성애는 역사적으로 범죄화 단계(規制)⇒ 비범죄화 단계(承認)⇒ 정상화 단계(保障)를 걸쳤기 때문이다. 동성애의 비범죄화는 동성혼을 인정/保障하는 단계까지 나아간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됨으로써 동성애는 사회적 승인의 단계를 넘어 보장의 단계로까지 나가게 된 것이다. 앞서 간통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동성혼의 합법화는 동성애에 대해서 더욱 강한 긍정적인 신호를 사회에 보내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끝나지 않고 모든 정책이나 행정에 있어서 친동성애적인 방향으로 작동케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동성애를 조장/肯定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신앙적 차원에서의 죄라는 발언까지도 동성애에 대해서 혐오하는 발언이라는 도식으로 이어지게 되고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는 교회 공동체의 스탠스에 대해서 반사회적/관용이 결여된 집단으로 몰아감으로써 이 사회에 반종교적/반기독교적 분위기가 만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는 점이다.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동성애에 대한 비범죄화를 넘어 정상화를 가져옴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에 대해 ‘오류가 있는 주장’인 것처럼 보이게 함은 물론이요, 이는 마치 성경에 무슨 하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성경의 권위 자체를 떨어트리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동성결혼 합법화⇒ 동성애 비범죄화/정상화⇒ 동성애 행위의 정당화⇒ 성경의 동성애 가르침에 오류가 존재⇒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의심의 증가⇒ 성경의 권위 약화⇒ 성경의 신적 계시됨에 의문’을 가지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sup>46)</sup>

이와 같은 동성애 조장의 결과/副作用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동성결혼을 법률로 인정/合法化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동성애자들이나 친동성애자들이 동성결혼을 이성혼의 위치를 놓고자 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앞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sup>47)</sup>와 ‘간음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동성애와 관련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동성애가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반동성애자들도 친/동성애자들이 동성혼의 합법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동성혼의 합법화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들

46) 성경에 대한 다른 해석의 존재로 인해 동성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동성애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성서구절들에 대한 해석에는 서로 상반되는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어, 성서를 근거로 한 동성애 정죄는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김희수, 2014: 229-230, “II. 동성애에 대한 성서해석의 불일치와 기독교파간 불 일치” 참조)

47) 최원진 (2020)이 자신의 논문 “한국교회의 난민선교를 위한 성경적 제안”에서 ‘V. 사마리아인 비유의 한국교회 적용방안’에 대해 다음을 언급하고 있다(최원진, 2020: 448-454) 1. 잘못된 이웃의 경계를 무너뜨려야 한다. 2.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행함을 요구한다. 3. 공급자 중심의 환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의 니즈(needs)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sup>48)</sup>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최종보고서』를 통해서 동성에 관계를 지닌 이들이 파트너와 공동생활을 유지하는데 시급한 필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실에서 이들이 파트너 관계 및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가장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는 ‘수술동의 등 의료과정에서 가족으로 권리행사(67.5%)’이고,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 부양-피부양 관계 인정’(44.6%), 동성커플에게 입양 허용(37.4%), 임대차 승계 혹은 임대주택 신청에서 가족 인정(29.1%) 등이라고 응답하였다. ... 그 이외에도 ‘각종 보험/금융상품에서 가족 혜택(27.6%)’,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서 배우자 승계(19.9%)’, ‘연말정산 등 세제 혜택(11.3%)’, ‘헤어질 때 재산분할 등을 청구(10.7%)’의 순서로 나타났다.(차선자, 2017: 94, 17번 각주)<sup>49)</sup>

신영현(2016)이 ‘미국연방대법원의 동성혼 관련 주요 판결’ 중의 하나로 다루고 있는 ‘United States v. Windsor’(2013) 소송의 주요 내용이 된 것도 돈/금전 즉 ‘상속세 면제 혜택(estate tax exemption)’에 관한 것이었다. “Edith Windsor와 Thea Spyer는 2007년 캐나다의 Ontario 주에서 혼인하여 뉴욕에 거주하고 있었다. 2009년 2월 Spyer가 사망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전재산을 Windsor에게 모두 남겼다. 비록 뉴욕에서는 동성혼이 합법적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법인 「혼인보호법(The Defense of Marriage Act, DOMA)」은 동성의 파트너를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Windsor는 생존배우자에 대하여 부여되는 상속세 면제혜택(estate tax exemption)을 받을 수가 없었다. 결국 그녀는 \$363,053의 상속세를 냈으나 곧 반환을 요구하였다. 연방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은 「혼인보호법」에 따르면 그녀는 생존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세를 반환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신영현, 2016: 165) 위의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최종보고서』에서 언급된 필요 중에서 성경적 가르침과 전면적으로 충돌되는 ‘동성커플에게 입양 허용(37.4%)’을 제외한 동성애자들의 이런 필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48) 김관임 교수(2009)는 “예수와 가난한 사람들—예수의 선포에 나타난 하나님나라 백성의 특권과 의무에 관한 소고”에서 하나님나라 백성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 하나님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살리시듯 생명 살림의 의무가 있다. 2) 하나님나라 백성은 하나님에게 받은 그대로 베풀 의무가 있다. 3) 하나님나라 백성은 하나님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김관임, 2009: 26-31, “3. 하나님나라 백성의 의무: 하나님의 뜻 수행.” 참조.)

49) 나영정 외, (2014).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최종보고서』. 한국케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개인적으로 편향(bias)인지는 몰라도, 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동성애자들의 사랑의 상대자 수(數)가 상대적으로 많고 그 기간이 짧다는 연구 결과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동성애 관계의 현실을 감안(勘案)한 해결책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이성혼의 경우도 같은 고민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다.(동성결혼에 대해서 반대하는 대신에 동성애자들이 동성결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리즈가 무엇인지 살펴보자는 것이다. 最惡이 아닌 次惡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 Ⅲ 나아가기

#### 1 요약하기

동성애와 관련해서 간음한 여인의 얘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간음을 인정/허용하신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간음한 여인이 지속적으로 간음을 했다면 예수님은 그녀를 측은(惻隱)이 여기시면서도 다른 것은 몰라도 오늘날 일부 혐오에 가까운 극단적 발언을 하시는 이들과는 달리 부드러운 음성-성경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으로 그녀에게 죄에서 떠날 것을 지속적으로 종용(慫恿)하셨을 것이다. 이는 동성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셨지만, 동성애자를 바라보는 마음은 간음한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혹시 지속적으로 동성애를 산다고 하더라도 극단적인 혐오성 발언은 삼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 삶으로부터 떠날 것은 지속적으로 종용해야 할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영생(eternal life)과 행함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칭의와 더불어 칭의에 감격한 성도의 삶은 자연스럽게 성화적(聖化的) 삶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웃에 범주에 동성애자와 같은 성적 일탈행위를 한 이들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사회적 공신력이 약한 교회 공동체 앞에 '선한'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의 동성애 등과 같은 성경적 가르침/주장에 대해서 일반인들에게 말발이 먹힐 확률[公信力]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동성애는 신학적 인권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이어야 한다. 다만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유동적인 법률적 인권이라는 점에서 이 사회가 동성애와 동성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平價]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속한 사회는 정교분리의 세속사회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현실과 이상 사이의-긴장 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성경적 가르침이 정교분리의 이 세속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支持/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사회적 실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 2 혼인 잔치 비유(The parable of the wedding banquet, 마22:1-14)와 동성애

1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2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 10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11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11 But when the king came in to see the guests, he noticed a man there who was not wearing wedding clothes.” <NIV>; “And the Melech, having entered to see the ones sitting bimesibba (reclining at tish), spotted there a man lacking the attire proper for the chasunoh” <OJB>] 12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14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4 For many are invited, but few are chosen.” <NIV>; “For many are called, but few are chosen.” <KJV>; “For the invited ones are many, but the nivcharim (chosen ones) are few.” <OJB>](마22:1-14; 눅14:15-24 참조)(마22:1-14, <개역개정>, 첨가는 본 연구자)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식탁에는 누구나 초청되었다. 예수님은 천국 혼인 잔치 비유를 통해 어떤 사람이 천국의 혼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청함을 받은 사람(the invited ones)은 많지만 선택함을 받은 사람(the chosen ones, nivcharim)은 적다고 한다(마22:14). 비유에 의하면 선택함의 기준은 혼인 잔치에 맞는 예복을 입는 것(wearing wedding garment/clothes/robe/suit)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마 22:11)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는 자는 그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칭의(稱義)는 필연적으로 성화(聖化)된 삶으로 이어지기/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강상우. (2022). “성에 관한 기독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 동성애를 중심으로.” 제39회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자료. 321-357.: <https://www.worldview.or.kr/library/article/3604>
- 강상우 (2020). “기독교, 동성애 그리고 선거: 손혜숙 교수와 이정훈 교수의 주장에 대한 재고”. 기독교학문학회 (통권 37호): <https://www.worldview.or.kr/library/article/3438>.
- 강상우 (2017). “동성애자들의 ‘세(勢, [數]) 불리기’에 대한 재고”. 기독교학문회. (통권 34호): <https://www.worldview.or.kr/library/article/2885>.
- 강 옹 (2005). “동성연애에 대한 성경적 견해”. 『문학과 종교』. 10(2). 1-26.
- 구미정 (2014). “동물의 권리와 ‘하나님의 형상’: 영화 <노아>를 중심으로”. 『생명연구』. 33. 11-44.
- 권순현 (2019).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에 대한 헌법적 평가”. 『유럽헌법연구』. 28. 295-318.
- 권연경 (2013). “값싼 구원에서 벗어나기”. 강영안 외 공저 (2013). 『한국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 서울: 새물결플러스. 77-101.
- 권혁남 (2018). “동성 간 결혼문제에 대한 비평적 논의”. 『인문사회21』. 9(2). 1063-1072.
- 권혁남 (2015). “간통죄 폐지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 『인문사회 21』. 6(3). 223-239.
- 김민중 (2016). “동성(同性) 간의 결합에 대한 법적 보호”. 『東北亞法研究』. 10(1). 191-240.
- 김성민 (2017). “기독교 사회정의를 통한 사회통합적 선교전략 연구.” 『복음과 선교』. 37. 81-125.
- 김세윤 (2013). “1장. 한국교회 문제의 근원, 신학적 빈곤”. 강영안 외 공저 (2013). 『한국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 서울: 새물결플러스. 17-36.
- 김영한 (2016). “3부. 제1장. 동성애 행위에 대한 영성신학적 해석: 동성애는 창조 본연의 가정 질서를 거슬리는 죄악”. 김영한 외 공저 (2016).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 용인: 킹덤북스. 267-300.
- 김일수 (2019). 『성소수자의 권리 논쟁』. 서울: 세창출판사.
- 김진규 (2017). “최근 동성애 논쟁의 주요 쟁점들: 제임스 브론슨의 동성애 관련 구약 본문 해석에 대한 비평”. 『신앙과 학문』. 22(1). 91-120.
- 김판임 (2009). “예수와 가난한 사람들-예수의 선포에 나타난 하나님나라 백성의 특권과 의무에 관한 소고”. 『대학과 선교』. 17. 9-37.
- 김희수 (2014). “동성애에 대한 다차원적 이해와 사랑과 평등과 공평의 윤리”. 『종교문화연구』. 23. 227-276.
- 문시영 (2021). “사회적 영성의 기원과 복원: 선한 사마리아인 제자도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49. 205-237.
- 문시영 (2009). “웹2.0의 시민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교회의 윤리적 과제”. 『기독교사회윤리』. 18. 199-227.
- 성인경 (2001). 『진리를 시퍼렇게 살아 있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성정숙·이나영 (2010). “사회복지(학)에서의 ‘성적 소수자’ 연구의 동향과 인식론적 전망: 페미니스



- 트 섹슈얼리티 이론의 가능성”. 『사회복지연구』. 41(4). 5-44.
- 손혜숙 (2019). 『트럼프 대통령의 새 시대와 동성애: 굿-바이 오바마 동성애, 성전환!』. 서울: (주) 기독교문서선교회.
- 손호현 (2017). “동성애와 신학적 인권-토마스 아퀴나스의 성(性)의 신학을 중심으로”. 『神學思想』. 177. 139-167.
- 송진준 (2020). “2019년, 개신교인의 젠더 인식”.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2020). 『2019년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자료집』.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51-57.
- 신영현 (2016). “미국의 동성혼 관련 판결의 분석과 함의”. 『嘉泉法學』. 9(3). 149-182.
- 신현우 (2016). “제1부. 제3장. 동성애의 원인과 해결: 성경과 과학의 진단과 처방”. 김영한 외 공저 (2016).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 용인: 킹덤북스. 99-141.
- 신현태 (2022). “요한복음의 성전사건에서 드러난 예수의 정체성-2장 15-17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21(1). 98-130.
- 안계정 (2013). 『기독교와 정의』.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 오승진 (2015). “동성결혼의 권리-미국의 사례와 국제인권법의 동향”. 『法學論叢』. 39(3). 325-347.
- 유성진 (2015). “동성결혼 합법화는 어떻게 가능하였는가?: 여론과 정당정치 그리고 연방주의”. 『한국과 국제정치』. 31(4). 177-201.
- 이민규 (2001). “율법사와 예수의 논쟁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10:25-35)”. 『一粒論叢』. 7. 73-95.
- 이소영 (2007). “동성애혼인에 대한 법적 개입의 딜레마와 가족이데올로기 해체”. 『법철학연구』. 10(1). 375-404.
- 이재현 (2016). “1부. 제4장. 바울이 말하는 동성애와 하나님의 진노: 로마서 1:24-27을 중심으로”. 김영한 외 공저 (2016).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 용인: 킹덤북스. 142-183.
- 이준호 (2022). “비유의 윤리적 의미와 신학적 해석의 가능성: 누가복음 10:29-37에 대한 해석학적 연구”. 『신학과 사회』. 36(2). 57-87.
- 이태호 (2012). “예수와 사회정의: 마가복음 11:15-17”. 『성경과 신학』. 61. 241-273.
- 이태희 (2016). “8부. 제2장. 동성애, 과연 인권의 문제인가?”. 김영한 외 공저 (2016).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 용인: 킹덤북스. 800-827.
- 임병필 (2018). 『샤리아, 알라가 정한 길』. 서울: 모시는사람들.
- 임준섭 (2019). “동성애에 대한 생리의학적 연구 동향분석과 기독교 교육적 고찰”. 『한국개혁신학』. 61. 32-61.
- 장춘식 (2008). “탄나임 시기 사마리아인의 영성형성과 그에 대한 랍비적 반응에 대한 고찰”. 『대학과 선교』. 15. 79-104.
- 전대경 (2017). “복음주의 성경해석학적 관점에서 본 ‘이웃됨’의 의미-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조직신학연구』. 26. 32-55.
- 전명수 (2015). “종교사회복지의 이념과 실천 방식에 대한 재성찰-종교사회복지의 이론화작업의 일환으로”. 『담론 201』. 18(2). 65-92.
- 정기문 (2015). “예수와 성전”. 『서양고대사연구』. 41. 7-34.

- 조찬선 (2001). 『기독교 죄악사(하)』. 서울: 평단문화사.
- 차선자 (2017). “동성 간의 생활공동체에 대한 법적 지원 방안 검토”. 『法學論集』. 22(1). 91-118.
- 채영삼 (2016). “1부 제5장. 동성애, 혼돈 속의 사랑”. 김영한 외 공저 (2016).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 용인: 킹덤박스. 184-210.
- 최원진 (2020). “한국교회의 난민선교를 위한 성경적 제안: 눅10:25-37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중심으로”. 『복음과 선교』. 49. 429-461.
- Bleyer, Alexandra (2015). DRUM PRÜFE, WER SICH EWIG BINDET: Eine kleine Geschichte der Ehe. Salzburg-Wien: Rösidenz Verlag. 한윤인 역 (2017). 『결혼의 문화사』. 서울: (주)재승출판.
- Helminiak, Daniel A. (2000). What the Bible Really Says About Homosexuality? millennium edition. NM: Alamo Square Press. 김강일 역 (2003).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 신이 허락하고 인간이 금지한 사랑』. 서울: 해울.
- Jennings, Theodore W. Jr. (2003). The Man Jesus Loved: homoerotic narratives from the new testament. The Pilgrim Press. 박성훈 역 (2011). 『예수가 사랑한 남자: 신약성서의 동성애 이야기』. 서울: 동연.
- Kaiser, Walter C. Jr. (2001). The Old Testament Document: Are They Reliable & Relevant? Downers Grove. IL: 김정봉 역 (2016). 『구약성서 다큐먼트: 구약성서의 신뢰성과 적합성』. 서울: 세움과비움.
- Lutzer, Erwin W. (2010). The Truth About Same-Sex Marriage: 6things you must know about what's really at stake. Chicago, Ill: Moody Publishers. 홍종락 역 (2011). 『동성애에 대해 교회가 입을 열다』. 서울: 두란노.
- Richards, Jeffrey (1991). Sex, Dissidence and Damnation: Minority groups in the middle ages London: Routledge. 유희수·조명동 공역 (1999). 『중세의 소외집단: 섹스·일탈·자주』. 서울: 느티나무.
- Wink, Walter (1986). Unmasking the Powers: The invisible forces that determine human existence. Philadelphia: Fortress. 박만 역 (2005). 『사탄의 가면을 벗겨라: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힘들』.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